

1.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‘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[2017.5.8.]’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
- 2) 산학협력교육, 융합교육의 제도화

나. 주요내용

- 1) 유연한 수업(학기) 운영을 위하여 제11조(학기)에 유연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
- 2) 유연한 수업(학기) 운영을 위하여 제12조(수업일수)에 교과별 수업일수로 집중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
- 3) 산학협력교육[산업체멘토링, 마케팅실습(LINC+) 등]에 대한 학점부여 근거 제공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제11조(학기) ① ~ ③ (생략) ④ (신설)	제11조(학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다.</u>
제12조(수업일수) ① (신설) ② 천재·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(개정20110228) ④ (신설)	제12조(수업일수) <u>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.</u> <u>기존 ① → ② 변경</u> <u>③ -----</u> <u>-제2항-----</u> <u>-----</u> <u>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, 제33조에 따른 학점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할 수 있다.</u>
제34조(학점인정) ① ~ ⑦ (생략) ⑧ (신설) ⑨ (신설)	제34조(학점인정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산업체멘토링, 학교기업과 연계된 마케팅실습과 같은 산학협력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 <u>⑨ 융합형현장실습, 융합형멘토링, 융합형캡스톤디자인과 같은 융합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</u>

현행	개정(안)
	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기존 ⑧ → ⑩ 변경 기존 ⑨ → ⑪ 변경
제36조(집중수업) 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.	제36조(집중수업) ----- ----- 제2항 ----- -----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